

공증인법 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법무부 법무과

I. 서언

2010. 2. 7. 공증 관련 법령의 일원화, 선서인증·전자공증 등 선진공증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증인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1961년 공증인법 제정 이래 48년만의 대대적인 개정으로서 공증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공증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공증인법의 개정배경과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니, 이를 잘 숙지하시어 공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개정배경

종래 임명공증인의 공증에 관한 사항은 공증인법에, 법무법인 등의 공증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법에 각각 규정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제도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조경험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고령인 공증인의 공증사무수행, 공증인의 공증사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 변호사 업무와의 겸업으로 인한 공증보조자에 대한 높은 의존 등으로 공증의 신뢰성·적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한편 공증인법 제정 이후 4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공증과 관련한 사회적 수요가 다양해졌고, 특히 IT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전자거래의 급증 등 기존의 공증제도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생겨나게 되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공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했으며, 유일한 공증인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임의가입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의 권익 대변과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증촉탁에 관한 국민의 불편 및 공증인의 서류보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Ⅲ. 개정경과

법무부는 2007. 1.부터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증인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2007. 11.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7. 12.에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후 2008. 4. 법무부에 학계·실무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증인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였고, 2008. 11.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2009. 1. 13. 제280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9. 2. 6. 법률로서 공포되어 2010. 2. 7. 시행될 예정입니다.

Ⅳ. 개정 공증인법의 주요내용

1. 공증 관련 법령의 일원화 및 공증인 자격 기준 강화 등

가. 공증 관련 법령의 일원화 등

개정 공증인법은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요건, 정년, 권리·의무, 공증사무수행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한편 인가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증담당변호사의 변호사 업무 수행에 따른 공증사무소 이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공증인 자격 기준 강화 및 정년제도 재도입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인 임명 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였으며, 개정 공증인법 시행 당시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명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증 담당변호사 등은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기득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공증인법은 지나치게 고령인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적절성·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증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공증인은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신규 공증인의 유입에 따른 공증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정년제도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년연령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법조 관련 공무원의 정년(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검찰총장 65세)·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2008년 기준 79.6세) 등을 고려할 때 75세 정년연령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이 70세를 면직사유로, 독일이 7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개정 공증인법의 75세 정년연령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 공증인법의 정년 관련 규정들은 2012. 2. 7.부터 시행됩니다.

2. 선진공증제도 도입

가. 선서인증제도 도입

종래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문서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현행법상 선서인증제도가 없어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증인법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였습니다.

나. 전자공증제도 도입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전자문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증인법은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거나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공증인이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은 2010. 8. 7.부터 시행됩니다.

3. 직무교육강화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단체화

가. 직무교육강화

개정 공증인법은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단체화

개정 공증인법은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증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회원(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으로)가입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하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국민불편법령의 정비 및 서류보존제도 개선

가. 시각장애인 공증촉탁시 친족의 참여인 자격 제한 폐지

종래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친족의 참여인 자격을 제한하여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개정 공증인법은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나. 서류보존제도 개선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임차 비용 등이 증가하여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증인법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서류 통합보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V. 결어

이번 공증인법 개정은 공증인법 제정 이후 48년만의 대대적인 개정으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증 관련 법령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여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임명공증인의 임명기준 강화, 정년제도 재도입, 공증인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공증사무의 신뢰성·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선서인증제도,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공증제도에 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고, 대한공증인협회를 강제가입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권한을 위임하여 협회가 공증제도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촉탁시 참여인 자격 제한 완화, 공증서류보존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과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증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증인법 시행령 등 6개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회원 여러분들의 공증 사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 제도가 예방사법(豫防司法)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